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1620호 및 제1621호
- 다. 제출일자 : 2020. 5.29
- 라. 회부일자 : 2020. 6.09

II.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1. 세 입

- 세입예산현액은 244억 1천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86억 5천2백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50억 6천1백만원, 불납결손액은 8천2백만원, 미수납액은 135억 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 수 납 제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일 반 회 계	24,415	48,652	35,061	82	13,509

2. 세 출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 796억 1천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3억 1백만원,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포함한 총 890억 5천8백만으로,
- 851억 9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지출액은 813억 2천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8억 6천6백만원, 집행잔액은 38억 6천 9백만원임.

(단위 : 백만원)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 출					
79,617	9,301	140	89,058	85,199	81,323	3,866	3,869

IV. 결산 주요내용 요약

1. 세 입

- 2019회계연도 세입은 예산현액 244억 1천5백만원으로 486억 5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50억 6천1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135억 9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하였음.
- 실제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320억 2천9백만원,

2. 세 출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예산성립 후 증감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	이체	
	예 비 비	전용*	변경사용**	
79,617	9,301 140	- -	- -	89,058

*. ** : 예산전용, 변경사용은 동일부서의 예산을 사용한 경우, 증감액이 0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액
89,058	85,199	81,323	3,866	3,869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9년도 예산액 796억 1천7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93억 1백만원,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합하여 총 890억 5천8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지출원인행위액 851억 9천9백만원 중 813억 2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38억 6천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8억 6천9백만원임(예산현액 대비 4.3%).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1): 총 1건, 3천 3백만원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1)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는 총 1건에 3천 3백만원을 전용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전용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1건				33	33	
환경보호 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3 행사운영비	200	33		167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401-01 시설비			33	1,325

○ 변경사용2): 총 10건, 3억 1천1백만원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총 10건, 3억 1천1백만원을 변경 사용하였음.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10건				311	311	
환경보호 일반	한강공원 매점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334	40		2,294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390		40	430
환경보호 일반	한강공원 수영장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9	4		45
	한강공원 수영장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0		4	121
환경보호 일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0	37		119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0		37	121
환경보호 일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0	44		119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7-01 연구용역비			44	44

2)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됨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환경보호 일반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6	3		13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201-01 사무관리비			3	16
환경보호 일반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5	13		22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201-01 사무관리비			13	16
환경보호 일반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40	10		120
	한강 서래섬 꽃 축제	201-01 사무관리비			10	10
환경보호 일반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	10		120
	한강 이색 축제	201-01 사무관리비			10	10
환경보호 일반	한강공원 시민이용홍보	201-01 사무관리비	1,350	50		1,300
	한강공원 시민이용홍보	207-01 연구용역비			50	50
환경보호 일반	자연(형)호안 복원	401-01 시설비	2,520	100		2,640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조성	401-01 시설비	2,800		100	3,132

○ 명시이월: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 총 12건, 38억 6천6백만원

	[계약일]	준공예정일 당초	준공예정일 이월후	
- 한강사업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019.12.02.	2020.06.30.	좌동	3억 3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019.02.27.	2019.12.14.	2020.03.13.	6천1백만원
-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연구용역비)	2019.10.29.	2020.04.30.	좌동	4천2백만원
-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019.08.20.	2020.06.30.	좌동	5억 1천8백만원
-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시설비)	2019.12.17.	2020.06.30.	좌동	5억 1천3백만원
-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감리비)	2019.12.16.	2020.06.30.	좌동	3천만원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사무관리비)	2019.08.30.	2019.12.01.	2020.02.28.	1천5백만원
-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19.11.27.	2020.07.31.	좌동	3천5백만원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	2019.08.27.	2020.06.30.	2020.09.04.	6억 8천3백만원
-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감리비)	2019.07.03.	2020.01.14.	좌동	1억 1천4백만원
-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연구용역비)	2019.12.17.	2020.05.15.	2020.10.31.	2천4백만원
- 자연(형) 호안 복원 (시설비)	2019.10.15.	2020.12.28.	좌동	15억 2천8백만원

○ 예비비: 총 1건, 1억 4천만원

- 소송비용

1억 4천만원

○ 불용액(집행잔액): 38억 6천9백만원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38억 6천9백만원임.

- 주요 원인별 내역

·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억 3천7백만원

· 낙찰차액

16억 1천2백만원

· 예산지출잔액

9억 2천만원

3. 추가경정예산 사업집행(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287회 정례회에서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예상되는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64억 8천만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 「한강공원나들목 증설 및 개선」은 7억 9천7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전용	예산 변경	예비비 사 용	추가경정 예산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 도이월	집행 잔액
합 계	17,045	1,180			140	6,480	24,846	23,735	797	313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148					150	298	283		15
녹지시설 유지관리	5,253				140	150	5,543	5,387		156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70	70	70		-
한강공원나들목 증설 및 개선	6,951	1,180				400	8,531	7,703	797	31
한강숲 조성	4,693					5,710	10,404	10,292		111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세입

□ 세입총괄(※결산서 p. 9)

- 2019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44억 1천5백만원으로 486억 5천2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2.1%인 350억 6천1백만원이며, 135억 9백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매년 150% 내외로 나타내고 있는데, 최고가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시설의 사용료 수입 증가(공유재산임대료)와 납세태만에 따른 체납발생(지난연도수입) 등이 주요 원인임. 이는 매년 반복하여 징수결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한 세입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용이라 할 것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조정률(B/A)	실제수납액(C)	불납결손액(D)	미수납액(B-C-D)
2019년	24,415	48,652	199	35,061	82	13,509
공유재산임대료	17,644	27,289	155	26,320		969
지난연도수입	196	12,376	6314	721		11,573
2018년	23,300	33,888	145	21,392	130	12,366
공유재산임대료	17,268	13,810	80	12,782		1,028
지난연도수입	165	10,730	6503	1,168	130	9,432
2017년	22,808	38,912	171	28,066		10,846
공유재산임대료	6,044	9,390	15	8,435		955
지난연도수입	137	9,430	6883	185		9,245

- 다만, 지난연도수입 중 미수납액 135억 9백만원은 세빛섬 정상운영이 늦어짐에 따라 시행사인 (주)세빛섬에 부과된 지체상금과 유도선 및 사용 수익허가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이 주된 이유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 주요내역〉

(단위 : 백만원)

과목	징수결정액 (가)	실 제 수납액 (나)	미수납액 (나)-(가)+(다)	미수납 발생사유
계	46,999	33,408	△13,509	• 불납결손액 82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7,289	26,320	△969	• 매점임대료(322백만원), 자전거대 여점(647백만원) 경영악화에 따른 체납 등
하천사용료	4,486	4,138	△348	• 수상업체(서울마리나 등)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49	143	△6	• 한강공원 매점(특점 GS 2호점)에서 한강본부로부터 고지서를 수령 후에 본사에 청구하여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나 매점에서 본사로 적기 청구가 누락됨. • 현재(2020년 5월) 납부 완료됨.
변상금 및 위약금	205	188	△17	• 한강매점 무단점용, 하천 불법점용
과태료	197	128	△69	• 최종납기일 미도래 및 납세 태만
그외수입	2,297	1,770	△527	• ㈜렛츠고코리아 소송비용
지난연도 수입	12,376	721	△11,573	• 세빛섬 영업공간 미개장에 따른 지체상금(7,144백만원) 및 수상업체 경영난에 따른 체납 (1,213백만원), 기타체납(3,216백만원)

- 서울시에서는 세빛섬 개장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주)세빛섬에 91억 9천2백만원을 지체상금³⁾으로 부과하였으나, 20년 동안 (주)세빛섬이

3) <플로팅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사업 협약서> 中

제37조(이행지체) ① 본 사업시설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내에 준공·운영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0.1%를 지체일수에 곱하여 현금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공사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청구를 철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⁴⁾하였음.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매년 공공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출금액을 감액 정산함에 따라 2019년회계연도 기준 지체상금은 66억 4천1백만원임⁵⁾.

〈연도별 세빛섬 지체상금 부과취소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체상금	사업정산 (감액)	잔 액 (이월)	비 고
2015년	9,192	921	8,271	사업 완료후 외부 공공성심의 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함
2016년	8,271	444	7,827	
2017년	7,827	253	7,574	
2018년	7,574	429	7,145	
2019년	7,145	504	6,641	

- 참고로,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공익성 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시켜 매년 일정 수준(4억 5천9백만원/년)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⁶⁾한 바 있음.

4)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①~④ (생략)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을 전부 이행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를 철회한다.

제8조(지체상금) 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여 승인된 공공성 확보계획 및 변경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경우 시장은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이행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이미 이행된 사항에 의하여 정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이미 부과한 지체상금의 남은 잔액(매년 물가상승률 포함)에 대하여 다시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의회 보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실제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체상금 91억 9천2백만원은 세입처리하지 않고 감액 정산한 금액을 미수납액으로 표기함.

6)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제5조(공공성 확보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합의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추가 확보를 위한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이하 "공공성 확보계획"라 한다)을 제출받아야 하며, 공공성 확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세빛섬 사업 관련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세빛섬 운영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세빛섬 운영 시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최근 3년간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주요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망카페	매점	자전거대여	합계
2017년	82	99	-	181
2018년	38	737	-	775
2019년	-	322	647	969
총계	120	1,158	647	1,925

〈2019회계연도 공유재산임대료 분할납부 주요현황〉

(단위 : 백만원)

	전체				1차분할				2차분할				3차분할			
	연간 사용료	납부 액	미납 액	납부 율 (%)	부과 액	납부 액	미 납 액	납부 율 (%)	부과 액	납부 액	미 납 액	납부 율 (%)	부과 액	납부 액	미 납 액	납부 율 (%)
	3,381	2,412	969	71.3	1,332	1,332	0	100	917	681	236	74.3	1,132	399	733	35.2
전망 카페	450	450	-	100	450	450	0	100	-	-	-	-	해당없음			
매점	2,103	1,781	322	84.7	701	701	0	100	701	681	20	97.1	701	399	302	57.1
자전거 대여	828	181	647	21.9	181	181	0	100	216	-	216	-	431	-	431	-

- 이밖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은 한강매점, 자전거대여점 등 사용수익 허가시설의 경영악화가 주요 원인임. 이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최고가낙찰제’ 방식에 의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액수로 응찰하여 낙찰된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간사용료를 분할납부하지만 일정기간(성수기) 동안 기대한 수익을 얻지 못해 납부의지가 점차 부족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사용료 분할납부의 악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 승인을 취소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된 바는 없음.

- 또한, (주)서울마리나를 비롯한 유도선사업체 등의 경영난에 따른 하천 사용료 체납이 매년 10억원 이상 발생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완전 납부를 위한 방안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임대료와 하천사용료 징수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이는 한강사업본부의 징수의지 부족과 사업자의 납부 의식 결여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징수실적 제고와 성실납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체납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도선사업체 등의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하천사용료 (당해연도)	359	400	348	1,107
지난연도수입	1,418	2,418	1,361	5,197
총계	1,777	2,818	1,709	6,304

〈(주)서울마리나 하천점용료 체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둔치	수상	합계(가산세 제외)
2012년	15	-	15
2013년	41	22	63
2014년	43	117	160
2015년	45	108	153
2016년	48	55	103
2017년	50	113	163
2018년	52	127	179
2019년	55	120	175
총계	349	662	1,011

나. 세 출

□ 세출총괄 (※결산서 p. 15)

-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796억 1천7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93억 1백만원, 예비비 1억 4천만원을 합한 총 890억 5천8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851억 9천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중 813억 2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38억 6천6백만원(사고이월 38억 6천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6천9백만원임(현액대비 불용률 4.3%).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당 초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					
2019	79,617	9,301	140	89,058	85,199	81,323	3,866	3,869
2018	72,963	11,765	232	84,960	79,304	70,003	9,301	5,535
2017	80,954	9,966	922	91,842	81,807	72,066	11,765	8,011

-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한강숲 조성」(57억 1천만원) 등 추가경정예산으로 64억 8천만원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예산 전용(轉用)(※결산서 p. 25)

- 2019회계연도 전용은 총 1건, 3천3백만원으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자벌레)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동일 세부사업의 시설비 부족분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2019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전년도 이월액	편성 액	전용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전용월일	
총 1건					33	33		
환경보호 일반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201-03 행사운영비		200	33			167
		401-01 시설비	1,292			33	2019.5.22.	1,325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뚝섬전망문화시설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자 필요한 공사금액 증액분(시설비)을 동일 세부사업의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전년도에 해당시설의 외벽보수와 리모델링 감리용역을 위해 동 사업의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사용⁷⁾함에 따른 부족분 발생에서 기인한 것임.
- 이는, 당초 리모델링 공사추진시 적정 공사비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9년도 본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임.

7) 변경사용 3천만원 : 외벽보수 감리비12백만원(2018.10.24.),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18백만원, 2018.12.20.)

- 따라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변경사용(※결산서 p. 26)

- 2019회계연도 변경사용은 총 10건, 3억 1천1백만원으로 동일 단위 사업내 세부사업간 부족분을 변경 사용하였음.

<2019회계연도 변경사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변경월일	
총 10건				311	311		
환경보 호일반	한강공원 매점유지관리	401-01 시설비	2,334	40			2,294
	한강공원 전망쉼터 및 카페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390		40	2019.12.16.	430
환경보 호일반	한강공원 수영장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9	4			45
	한강공원 수영장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17		4	2019.10.17.	121
환경보 호일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200	37			119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0		37	2019.3.26.	121
환경보 호일반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163	44			119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207-01 연구용역비			44	2019.10.23.	44
환경보 호일반	한강공원 위탁 체육시설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16	3			13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201-01 사무관리비	13		3	2019.8.28.	16
환경보 호일반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5	13			22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201-01 사무관리비			13	2019.8.28.	16
환경보 호일반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40	10			120
	한강 서래섬 꽃 축제	201-01 사무관리비			10	2019.12.24.	10
환경보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30	10			120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변경월일	
호일반	한강 이색 축제	201-01 사무관리비			10	2019.12.24.	10
환경보 호일반	한강공원 시민이용홍보	201-01 사무관리비	1,350	50			1,300
	한강공원 시민이용홍보	207-01 연구용역비			50	2019.10.31.	50
환경보 호일반	자연(형)호안 복원	401-01 시설비	2,520	100			2,640
	여의도 셋강 생태거점조성	401-01 시설비	2,800		100	2019.12.24.	3,132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한강공원 수영장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의 예산 변경은 수영장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것임. 한강수영장 운영은 사용수익허가방식으로 공공요금은 해당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운영자가 운영여건 불만에 따른 손실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공공요금 납부태만으로 귀결된 것임.

○ 이밖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변경사용한 사업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연구용역비 등 총 5건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사정변경과 시급성에 따라 비목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임.

○ 그러나,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여 변경 사용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점검이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이를 지양하여야 할 것임.

□ 명시이월 - 해당사항 없음

□ 사고이월 (*결산서 p. 79)

-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2개 사업, 38억 6천6백만원으로, 전년(93억 1백만원) 대비 54억 3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또한 다음연도 집행실적에서 지출액은 30억 1천9백만원이며, 3개 사업의 집행실적은 5월말 기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2019 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사고 이월	집행 잔액	다음연도 집행실적 (2020.5.31 기준)		비고	
						지출 액	지출 잔액	계약 일자	준공 예정 일
계	12건	22,499	18,416	3,866	216	3,019	847		
한강사업본부 청사시 설 유지관리	시설비	1,285	931	303	50	130	173	2019. 12.02	2020. 06.08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 지관리	시설비	2,251	2,110	61	80	61		2019. 02.27	2020. 03.13.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연구용 역비	44		42	2	42		2019. 10.29	2020. 04.30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 지관리	시설비	5,551	5,023	518	10	495	23	2019. 08.20	2020. 06.30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 리	시설비	2,295	1,755	513	27	388	125	2019. 12.17	2020. 06.30
	감리비	32		30	2		30	2019. 12.16	2020. 06.30
한강공원 난지 캠핑장 리모델링	사무관 리비	16		15	1	15		2019. 08.30.	2020. 02.28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 리비	120	80	35	5		35	2019. 11.27	2020. 07.31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	7,965	7,278	683	4	594	89	2019. 08.27	2020. 06.30
	감리비	250	115	114	21	114		2019. 07.03	2020. 01.14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 보	연구용 역비	50	24	24	2		24	2019. 12.17	2020. 10.31
자연(형) 호안 복원	시설비	2,640	1,100	1,528	12	1,180	348	2019. 10.15	2020. 12.28

- 이 중,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는 한강평화포럼 운영 등을 위해 1억 2천만을 편성하여 8천만원을 집행하고 3천5백만원을 사고이월, 5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다음연도 집행실적 (2020.5.31 기준)	
								지출액	지출잔액
한강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40		△20	120	80	35	5		35

- 사고이월 3천5백만원은 한강평화포럼 기획·운영 용역의 발주 지연에 따른 것인데, 금년도 7월말 사업종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포럼이 한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임. 코로나19에 따른 개최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해당 용역이 당해연도 11월에야 체결된 점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당초 본예산 편성시 포럼운영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사업내용 등이 전무하다는 지적⁸⁾(2018.11)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이 당해연도 10월에서야 수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용역 발주 후 지출 잔액을 한강축제(이색축제, 서래섬꽃축제) 홍보비로 2천만원 변경사용(2019.12.24.)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를 과다하게 편성한 후 행정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재정운용 행태라 볼 수 있음.

8) 2019년도 한강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 12개 사업 모두 사전절차 이행 및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로 제시하고 있지만, 「자연(형) 호안복원」은 사고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년도 12월에서야 준공될 예정임. 또한, 4개 사업의 경우 당해 12월에 계약이 집행된 점은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에는 곤란하며, 이월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악용될 소지가 있음. 특히, 하반기발주는 관련 사업의 추진에도 영향이 있는바, 부득이한 이월 이외에는 가급적 연내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예비비 지출 : 1억 4천만원(※결산서 p. 27)

-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1억 4천만원으로 녹지관리과 기간제근로자 작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로 항소 및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지급 명목으로 지출한 것임.

〈2016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액	지출 사유
2016년	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수영장 익수사고 손해배상금과 동작전망카페 명도소송 등 2건
2017년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원초록길 조성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공사 공사대금(간접비) 청구 소송 판결금과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변 사고로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소송 판결금
2018년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포천교 인근 익수 사망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2019년	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 기간제근로자 작업 중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로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공탁금 지급

- 소송관련 비용은 연례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나 한강 사업본부의 귀책이 명백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미리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 집행잔액(※결산서 p. 16)

-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38억 6천9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4.3%)으로 전년도 55억 3천5백만원(현액대비 불용률 6.5%)에 비해 16억 6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주요 불용사유는 낙찰차액 발생 및 계획변경 등임.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현액	89,058	84,960	91,842	75,643	65,121
불 용 액	3,869	5,535	8,011	3,761	5,235
불용률(%)	4.3	6.5	8.7	5.0	8.0

1) 낙찰차액 무단 사용

〈공사, 설계비 낙찰차액 발생 및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본예 산	추가 경정	예산 액	낙찰 액	집행 액	낙찰 차액	낙찰차액 사용현황	
							사용액	사용내역
한강숲 조성	4,694	5,710	10,404	8,135	10,292	1,227	1,227	공사 설계변경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물 량증감 및 수목 추가 식재
여의도 셋강 둘레길 환경정비	100		100	75	99	11	11	여의셋강 생태공원 안내체 계 개선용역

- 「여의도 셋강 둘레길 환경정비」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을 본 공사 종료(2019.8.10) 후 「여의셋강생태공원 안내체계 개선」 설계 용역비로 전액 사용하였음(2019.9.2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해야 하며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예산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적으로 추진한 경우임.
- 또한, 「여의셋강생태공원 안내체계 개선」 사업 계획 수립(2019.9.27) 이전에 자문회의(2019.9.9)를 실시하였는데, 이후 해당사업의 용역을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책임연구자)과 수의계약(2019.10.11)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계약질서를 훼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임.
- 「한강숲 조성」 사업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12억 2천7백만원을 물량증감 등을 이유로 준공 기한을 앞두고 설계변경을 서둘러 추진하여 예산을 소진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례에 해당됨. 향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될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어 우려됨.
- 낙찰차액의 무단사용은 시의회의 예·결산 심의 권한을 훼손하는 경우로 향후 낙찰차액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재정 운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한강숲조성 낙찰차액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액		사용내역									
	낙찰 차액	예산 잔액	여의도 그늘숲		광나루 이용숲		반포 그늘숲		강서 이용숲		광나루 선사숲	
			설계 변경일	11.25	설계 변경일	12.4	설계 변경일	12.11	설계 변경일	12.18	설계 변경일	12.20
			준공일	12.15	준공일	12.7	준공일	12.15	준공일	12.29	준공일	12.29
한강숲 조성	1,270		303		112		149		214		492	
	1,227	43										

- 또한, 설계변경을 서둘러 추진함에 따라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추가 수목식재와 현장여건 변화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은 하천관리청과의 사전협의 및 추가적인 수리영향검토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았음. 향후, 동 사업의 설계 변경시 한강의 치수기능이 지장 받지 않도록 철저한 식재 안정성 검토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2)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따른 불용 발생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따른 불용 발생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사유
			합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둔치 및 화장실 청소	8,165	7,220	945	598	176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용역근로자 공무직 전환 음식물수거차 구매보류
한강공원 조명시설 설치 및 운영	1,757	1,587	170	16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명등 고효율 LED교체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506	2,100	407	163	188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수·승강기 가동 전기요금 등 잔액 및 공공요금 분수 가동 월드컵분수 가동 중지에 따른 미집행

-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사업 등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당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내년도 수요를 과다 예측하는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임.
-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불용발생 사유 중 음식물수거차 구매취소는 본예산 편성 이후 구매 가능여부를 검토한 결과,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2019.01.07)⁹⁾ 불용 처리한 것임. 이는 2020년 본예산 편성시에도 동일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음.
- 또한,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의 불용발생 사유 중 월드컵 분수 가동 중지에 따른 미집행은 분수 재가동을 위한 용역¹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분수를 전시관으로 기능전환하는 것이 결정(2019.1.30.)됨에 따라 분수 재가동 비용을 불용 처리한 것임.
- 음식물수거차 구매와 월드컵분수 재가동은 사업추진 여부를 면밀히 따져본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에 의해 불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감액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 화해야 할 것임.

9) 음식물수거차량 구매보류 요청 : 음식물수거차는 폐기물관리법 검토(임시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와 협의후 구매여부 확정

10) 월드컵분수 설계용역(2018.5.23 ~ 2019.7.31), 121,700천원 : 2015년 이후 가동중지된 월드컵분수의 보수와 재가동 여부가 본 용역의 목적임.

3) 연례적 과다한 불용 발생

〈연례적 과다한 불용 발생 사업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19		2018		2017		2016	
	집행잔액	불용률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243	9.7	313	14.4	380	14.1	348	12.8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406	16.2	398	17.0	287	14.5	367	12.5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와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은 최근 연도별 결산내역에서 예산불용(불용률 10% 내외)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사업은 매년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필요하나,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